제14장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제51조 (계약 목적)

1. 이용계약을 통하여 보호자에게 서비스 이용내용 및 이용금액에 대해 정확히 설명하고 주보호자의 의무와 요양원의 의무를 정립한다.
2. 이용계약 시 요양원 안내문과 개인정보 활용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하고 이해시키도록 하며 보호자의 서명을 받도록 한다.
3. 표준약관을 토대로 계약하여 사랑지기와 보호자가 각 1부씩 날인하고 보관함으로서 계약의 객관성을 확보한다.

제52조 (계약 기간)

1.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별도의 희망기간을 정하지 않는 경우 인정서의 유효기간으로 하며, 장기요양등급의 변동에 따라 변동사항에 대해 입소자 및 보호자에게 안내문 발송이나 간담회 등을 통해 고지하고 서명 또는 이에 준하는 증명을 하는 것으로 갈음한다.
2. 계약만료 시에는 이용자의 퇴소 또는 서비스 종료를 원할 경우에는 본 시설에서의 서비스가 종료된다.

제53조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이용계약은 본 시설 이용이 적합하다고 판정되어 장기요양등급 대상자로 장기요양 인정서 유효기간을 계약기간으로 상담 후 이용계약을 체결하여 입소자 또는 이용자와 시설과의 계약, 계약기간 및 내용 등에 관한 사항을 .명확하기 위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2. 입소보호 이용계약(서약)서를 작성하되 계약서내용에는 계약목적과, 계약당사자(기관주체, 서비스이용자, 서비스 이용보호자), 인적사항, 계약기간 및 해지, 급여비용, 비용수납, 계약자 의무, 시설 및 건강관리, 배상책임, 이용규정, 개인정보 보호의무, 계약사항 확인 서명 등 포괄하여 작성하여 상호계약을 체결하여 각각 이용계약서를 보관한다.
3. 입소 및 이용계약은 입소자나 이용자 본인과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입소자 또는 이용자 본인이 치매, 정신질환 등 사유로 시설과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불가능한 때에는 보호자 또는 법정대리인의 계약도 유효하다.

제54조 (급여비용/이용료)

1. 입소 또는 이용료의 기준은 각 연도별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수가산정 및 비용 청구지침 상 본인부담금 수납규정에 의한다.
2 급여비용은 장기요양급여비용 산정기준 등에 관한 세부사항에 따라 계산 한다.
3. 전항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비용은 전액 본인이 부담한다.
① 식재료비

② 기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비급여로 고시한 사항

4. 급여비용 중 본인부담액과 등급별 요양급여의 월 한도액을 초과하는 비용은 시설의 청구에 의해 입소자 또는 이용자가 이를 부담한다.

5. 월 이용료는 본인 일부부담금과 비급여로 구성되며, 본인 일부부담금은 매년 국가가 정한 등급별 해당금액으로 한다.

6. 입소시설 급여비용은 장기요양등급 및 급여제공일수를 기준으로 산정하고 개인위생, 목욕 등 신체활동지원, 간병·수발 등의 일상생활지원, 일상동작훈련, 기능훈련, 기타 복지서비스 등 입소시설에서 생활하는데 필요한 제반 비용은 별도 산정하지 아니한다.

구 분		비율	내 역
월 이용한도	보험료	80%	서비스이용자의 등급에 따라서 비 급여를 뺀 100%중 80% 보험공단으로부터 지급.
자부담	보험료 일반 (개인부담금)	20%	보험공단이 80%이고 개인 부담금이 20% 임.
	보험료 경감 (개인부담금)	12% / 8%	보험공단이 88% / 92%이고 개인 부담금이 12% / 8%임.
	식사재료비	1일/8,100원	1식 2,700원으로 하루 3식
	간 식	1일/1,000원	오전 또는 오후1회
	상급침실 이용료	-	-

<표 1 2025년 1월 1일 기준>

제55조 (급여비용 청구)

①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의거하여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이용비용과 더불어 비급여비용을 합산한 금액을 본인부담으로 한다.

②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감면받는 대상자일 경우 감면절차 및 감면방법은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감면 처리된다.

③ 급여비용은 등급판정결과에 따라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의거하여 해당 연도 수가를 적용한다.

④ 급여비용은 익월 10일까지 카드 결제, 기관통장(농협 301-0146-1570-21 사랑지기어르신마을요양원)으로 결제받으며 현금 이체 후 요청 시 현금영수증을 발행한다.

제56조 (신원인수인의 권리・의무)

1.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등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신원인수 방법 : 입소보호의 경우에는 시설 내에서 보호자를 동반하여 입소하여 인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신원 인수 권리 및 의무 : 신원 인수는 주민등록증 등 신원을 확인하고 건강상태를 점검하고, 인수인계에 철저를 기하고 권리 및 의무를 다하고 건강관리 등에 임한다.

권리 - 서비스 당사자의 상태에 대해 알 권리

- 서비스 제공내용에 대해 알 권리

- 서비스 제공계약에 따른 권리 주장
- 대상자의 상태변화에 따른 서비스 변화요청의 권리

의무 - 서비스 전 입소자의 상태 및 건강상의 문제에 대하여 요양에 필요한 정보를 숨김없이 제공해야 한다.
- 신원인수인의 신변에 변화가 있을 경우 고지할 의무가 있다
(해외이주, 금치산,또는 파산선고등으로 의무를 다하지 못 할 사유발생 시)
- 서비스 당사자의 상태를 알릴 수 있는 연락처를 제공해야한다
- 변경 시 즉각 변경된 연락처를 제공해야한다.

2. 준수사항

① 이용계약은 표준장기이용계획서를 바탕으로 체결해야 하며, 수급자의 선택을 존중해야한다.

② 계약서는 장기요양보험공단에서 인증 받은 계약서를 사용한다.

③ 장기요양비용명세서는 월1회 제공하고 1부씩 나누어 보관한다.

④ 장기요양비용명세를 발급하고 본인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을 시에는 어떻게 독촉하였는지를 기록해 놓는다.

제57조 (계약의 해제)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입소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입소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2. 3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3. 시설 내에서 시설 규칙이나 시설 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시설 운영 또는 타 입소자의 생활에 지장을 줄 때
4.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타 입소자의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5.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제58조 (시설물 사용상의 주의사항)

1. 입소자는 시설이 제공하는 시설물에 대하여 그 본래의 용도로 사용해야 하며, 파손에 대하여는 입소자 또는 보호자가 원상회복하여야 한다. 이때 원상회복이 곤란한 경우 시설이 산출하여 제시하는 비용을 납부하여야 한다.
2. 시설이 제공한 시설물 외에 개인적인 시설물이나 장비가 필요한 경우 시설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하며, 추가사용 시 발생하는 비용에 관해서는 입소자 또는 보호자가 부담 한다.